



초등학교

학생 사회참여활동

안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차례

■ 초등학교 학생 사회참여활동 안내서 04

■ 사회참여 교육 운영 방향 05

■ 사회참여와 사회참여활동 07

- 사회참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07

- 사회참여는 왜 할까요? 07

- 사회참여활동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8

■ 사회참여활동의 방법 10

- 사회참여활동 4단계 틀아보기 10

- 사회참여활동 4단계 적용사례 10

- 만다라트를 활용하여 해결방법 찾아보기 13

■ 사회참여 프로젝트 수업 하기

[3~4학년군]

- 너와 나의 「학급자치」 프로젝트 17

-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 프로젝트 27

[5~6학년군]

- 모두를 위한 「인권」 프로젝트 39

- 평화와 공존의 「지구 환경」 프로젝트 49

[불임]

1. 세계아동권리협약 60

2. 대한민국 헌법 62

초등학교 학생 사회참여활동 안내서



01

자료집 안내

● 학교 민주시민교육 이란?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 인권(노동인권), 평화, 생태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능·가치·태도를 배우고 참여하며 실천하게 하는 교육

- ①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율성 교육
- ②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토론하며 공적 책임을 갖는 공공성 교육
- ③ 사회적 공감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며 함께 살아가는 연대성 교육

■ 초등학생 사회참여활동 안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식으로 익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 직접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돋는 자료입니다. 이를 위해 사실이나 이론 전달 중심이 아닌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생 사회참여활동은 시민의 눈으로 학교, 마을, 국가, 세계 등의 공동체를 주제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실을 스스로 바꿔 나가는 실천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입니다.

■ 사회참여활동은 ‘공감해요’, ‘이해해요’, ‘판단해요’, ‘행동해요’ 4단계로 배움을 구조화하였습니다.

- ① [공감해요] 주제와 관련한 실제 활동 사례를 제시하여 관련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② [이해해요] 관련 지식, 법, 제도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깊이 있게 관련 주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③ [판단해요] 사회적 현안을 논쟁적으로 다루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학생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④ [행동해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성취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맵핑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였습니다.

■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주제와 민주시민성 영역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자유롭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R코드 동영상을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살펴보시고 광고 등 불필요한 장면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02

사회참여 교육 운영 방향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 ◎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 교육 원칙

■ 헌법적 가치 존중의 원칙

인류 보편적 가치 지향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UN) 인권 협약에 기반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 지향

■ 학습자 주도의 원칙

학습자 주도성 보장 학습자의 능력과 의사를 중심에 두고 자발성을 존중하며 학습자의 능동적인 행위 주도성 지원

■ 논쟁성 재현의 원칙

사회적 현안 및 현상 연계 논쟁적인 사회적 현안 및 현상에 대해 다양하고 균형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논쟁점을 탐구하여 스스로 판단하도록 지원

■ 교화 및 일방적 주입 금지의 원칙

토론 및 참여, 실천 학습자에게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를 강요하지 않으며 학습자의 자유로운 토론과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

● 교수-학습의 방향

■ 주체적인 학생의 성장과 발달 지원

확산적 사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학생과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 학습 지원

강조역량 자기관리(성찰, 계획, 실천) 협력(참여, 책임)

■ 논쟁적인 사회 현상(안)을 반영한 토의·토론 학습 지원

토의 토론 비판적 사고력과 자립적 견해를 바탕으로 사회의 논쟁적인 사안을 자유로운 토의와 토론 학습 지원

강조역량 의사소통(표현, 이해, 조정), 다양성존중(문화감수성, 타인인정) 문제해결(지식정보처리, 비판적사고, 창의적 사고)

■ 삶에 기반한 다교과 연계 프로젝트 학습 지원

교과 융합 자연 및 사회 현상(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다교과 연계 프로젝트 학습 지원

강조역량 협력(참여와 책임), 문제해결(지식정보처리, 비판적사고, 창의적 사고)

■ 참여와 실천 중심의 사회참여 학습 지원

참여 실천 삶에 기반 한 다양한 학교와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는 사회참여 학습 지원

강조역량 자기관리(성찰, 계획, 실천), 의사소통(표현, 이해, 조정), 협력(참여, 책임),

다양성 존중(문화 감수성, 타인인정), 문제해결(지식정보처리, 비판적사고, 창의적 사고)

● 평가의 방향

■ 학습의 결과 뿐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 대한 평가 실시

확산적 사고 수업 속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확산적 질문을 바탕으로 학생의 발달을 관찰하여 반영

■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을 위한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토의 토론 소그룹 토의와 발표, 보고서 작성, 논술형 평가 등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 활용

생활 연계 삶에 기반 한 다양한 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견학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평가 반영

■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연계한 평가 실시

교과 융합 자연 및 사회 현상(안)을 다교과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과목별 특성에 따라 수행평가 진행

03

사회참여와 사회참여활동

●● 사회참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회참여란 자신이 속한 사회(학교, 마을, 나라,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작게는 내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집 앞과 골목 청소하기’, ‘급식실에서 질서 지키기’, ‘학교안의 위험물 찾아 제안하기’ 등 내 주변의 문제를 들여다 보면 점점 시야가 넓어져서 ‘학교 앞 건널목 설치하기’, ‘학생과 선생님의 조화로운 인권 보호하기’, ‘공공기관(시군구청구청, 시군구의회, 교육청, 경찰서, 국회, 청와대 등)에 잘못된 제도와 법률 고치기’ 같은 활동도 기획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사회참여에서 중요한 것은 고쳐야 할 것을 찾아 단순히 제안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참여수업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교육이며 서로의 존엄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입니다.

●● 사회참여는 왜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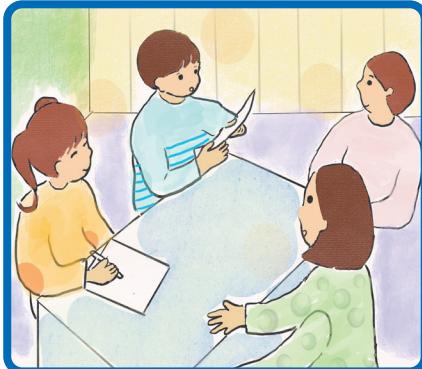
우리는 학교와 마을에서 놀고, 먹고, 모이고, 협동하고, 말하고, 예술하고, 교육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마을에서 우리만의 색깔로 함께 사는 방식을 만들고 이웃의 다른 삶을 존중하고 선택합니다.

자신이 속한 학교와 마을 등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행동인 사회참여를 통해, 나와 이웃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학교와 마을, 국가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도 성장하고 변화함을 느끼게 됩니다.

- ① 주체적으로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율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 ②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토론하며 공적 책임을 갖는 공공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 ③ 사회적 공감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상호 작용하며 함께 살아가는 연대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 사회참여활동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사회참여 동아리 만들기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한 사회참여 동아리 만들기

기후위기 심각성을 느낀 학생들이 함께 모여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기 위해 학교 안 '사회참여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 찾은 문제점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캠페인 활동, 기사 작성, 언론사 제보, SNS의 해시태그 운동

○○청소년인권연합회는 축제와 거리 캠페인, 1인 시위, 전단지 배포, 피케팅 등의 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학생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문제와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기

지지 요청하기, 설득하기

초등학교 학생회는 학교 이름 변경을 위해서 동문회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결국 시대에 맞지 않는 학교 이름을 바꾸는 데에 동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정책 결정자에게 문제 해결 요청하기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기관의 정책 결정자에게 면담 요청하기, 편지 쓰기

학생들이 구청장에게 동네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을 요청하자 구청장은 직접 교실을 찾아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직접 동네를 함께 돌며 위험 시설 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하기

정보공개 사이트(www.open.go.kr)에서 우리가 찾은 문제와 관련된 기관에 자료 요구하기

2018년 ○○센터 회원으로 구성된 알 권리 감시단은 ○○시 25개 구의회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구의원들이 가족·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세금으로 수백만 원씩 결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청원 , 민원 , 국민 제안(국민생각함 등) 하기

청원, 민원, 국민 제안 사이트에 정책 제안하기

학생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에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정책 제안'을 올렸습니다. 이 정책은 청소년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기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 예술 활동으로 문제 알리기

미술·음악·문학 등 예술 활동으로 문제 해결 동참 요청하기

인천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과거 일본군 군수 공장(미쓰비시 제강 인천제작소)이 있었던 인천 부평시민공원에 강제징용노동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웠습니다.

04

사회참여활동의 방법

● 사회참여활동 4단계 틀아보기

사회참여활동(4단계)

-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원인) 찾기
- 문제 분석하기
- 문제에 따른 해결 방안 제시
-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계획) 세우고 실천하기(미국 프로젝트 시티즌 모형)

단계	활동	세부 내용
1단계	문제 찾기 (활동 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불편을 주고 있나요?• 이 문제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2단계	문제 원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가 발생한 원인(불편한 이유)은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문제와 관련된 제도, 정책은 무엇인가요?
3단계	해결 방안 (공공정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활동을 지지할 사람과 반대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4단계	실천계획 및 실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천활동 일정과 계획을 써 볼까요?• 모둠원의 각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활동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사회참여활동 4단계 적용 사례

교실을 넘어 지구를 지키는 제로웨이스트

제안학교 : 인천마장초등학교

【1단계】 문제제기

- 해결하고 싶은 문제:(생태)기후위기대응
- 어떤 불편이 있나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가열화, 해수면상승, 산림파괴, 기후난민, 생물 종 파괴, 쓰레기 대란 등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속 불가능한 지구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생태문제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지역사회와의 노력과 실천은 더디기만 한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1년간 사용하는 비닐은 235억장(46만 9200톤)이며 플라스틱컵은 33억대(4만 5900톤), 폐트병은 33억개(7만 1400톤)라고 합니다. 이러한 쓰레기들은 지구를 10.6바퀴나 돌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학교 수업이나 뉴스 기사 등을 통해 쓰레기 문제를 자주 접하지만 실제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구 환경,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실천하는 학생은 별로 없었습니다. 기후위기대응은 먼 이야기, 거대한 실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실, 학교, 마을 공간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것들로 인해 지구 환경 및 기후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후위기에 문제 의식을 가진 우리가 교실을 넘어 지구를 지키기위해 생태환경문제에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빈 공간에 쪄져 있는 전등과 무분별한 냉난방기 사용, 급식실에서 친구들이 남기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미흡 등이 결국은 지구를 위험하게 만드는 문제라는 자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2단계 】 원인분석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교실을 넘어 지구를 살리는 제로웨이스트, 7가지 레인보우 사회참여

지구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학생 수준에서 생각하고, 대응하기 위해 각 문제의 실태 및 심각성 홍보,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활동은 우리 20명 동아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전체, 학부모의 협조, 그리고 사회의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인 환경에 관하여 그중에서도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것인가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다양한 실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이 문제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 제도가 있나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단소종립·녹색성장 기본법

【 3단계 】 해결방안

-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의 해결책은?

기후변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구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학생들이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어른들도 관심을 가질것이며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조와 지원을 위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실을 넘어 지구를 살리는 제로웨이스트, 7가지 레인보우 사회참여

- **빨:** 빨대, 일회용품 그릇, 비닐봉지 거절하기
- **주:** 주방세제, 미용세제는 친환경 세제로
- **노:** 노(NO)빨대, No일회용품, No회용품을 사용하는 용기내 프로젝트
- **초:** 초록학교, 초록 교실, 초록 가정 그린존 만들기
- **파:** 파란 하늘을 위해 녹색에너지 실천하기
- **남:** 남기지 말고 음식 다 먹기
- **보:** 보면 쓰레기를 주워요, 나부터 줍깅실천하기



[4단계] 실천활동

-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실천 계획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 주도 작은 실천과 기후변화 행동에 관한 촉구와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실을 넘어 지구를 살리는 제로웨이스트, 레인보우 사회참여]

실천과정



-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실천 활동은?

활동소감

-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의사민으로서 우리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표출하기 위해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정은 참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으며 수업시간과 다른 내 삶과 연결된 배움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 처음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주민들 앞에서 여러 실천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과 학교, 마을, 지역 사회의 문제를 바꿔나가기 위해 함께 모색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정책제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교육청은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여 청소년시절에서부터 환경,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청소년과 주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할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십시오.
- 학교는 급식소에서 나오는 일회용품과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 지자체는 공공기관 및 지역 가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수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세요 또한 마을 곳곳 녹색 환경 공간을 조성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십시오 .청소년과 지역환경기관(활동가)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십시오.

● 만다라트¹⁾를 활용하여 해결방법 찾아보기

- ① 사회참여 활동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생각하여 적어 봅시다.
- ② 비슷한 문제를 적은 학생들끼리 모둠을 구성한 뒤,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만다라트의 가운데 칸에 적어 봅시다.
- ③ 가운데 칸을 둘러싼 8개의 빈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참여 방법을 적어 봅시다.

(해결방법)
구청, 시청 담당 공무원 연락하기

(해결방법)
마을 주민 인터뷰하기

(해결방법)
지역 교통 안전 단체
알아보고 연락하기

(해결방법)
마을 교통 안전지킴이
모임 만들기

[주제]
우리 마을 교통안전 문제

(해결방법)
캠페인 활동하기

(해결방법)
교통안전 침해
현장 조사하기

(해결방법)
정책 결정자에게 해결 요청하기

(해결방법)
교통안전 관련
제도 조사하기

1) (Mandal-Art) 자신의 생각을 사방팔방으로 퍼나가는 생각 확장방법으로 연꽃기법이라고도 함

사회참여
프로젝트
수업하기

3-4학년군



[3-4학년]

너와 나의 「학급자치」 프로젝트

관련 교과	국어, 도덕, 미술	적용학년	3-4학년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자치활동의 필요에 공감할 수 있다.■ 학급자치와 학급자치활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학급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동할 수 있다.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성 ■ 공공성 ■ 연대성		
인천교육 핵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해결 역량, 다양성 존중 역량, 협력 역량		

교육과정 성취기준 맵핑

성취기준

- 【4국01-01】 대화의 즐거움을 알고 대화를 나눈다.
- 【4국01-02】 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 【4국01-03】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 【4국01-05】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 【4국01-06】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 【4국02-04】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한다.
-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 【4도02-02】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 【4도02-04】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경청 도덕적 대화하기 도덕적 민감성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4도03-01】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공익의 중요성을 알고,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기른다.
-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 【4미02-04】 표현 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

위 성취기준은 다음 자료에 적용한 성취기준입니다.

이 외의 다른 성취기준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다양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더 좋은 학급살이를 위한 마음



자료1 학급자치를 위한 마음

수민이의 일기

202X년 3월 10일 날씨 맑음.

새 학기가 시작되고 1주일이 지났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새롭다.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 괜찮겠지?

그런데 며칠째 계속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 급식 먹는 일 때문이다. 친구가 배식을 해주는 데 자꾸 장난을 치거나 차별해서 양을 덜어준다. 생각해보니 또 있다. 방과 후에 청소를 할 때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대충한다. 선생님께 이야기했지만 그때뿐이다. 나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 볼 때마다 짜증이 난다. 희준이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선생님께서 더 좋은 학급이 되기 위해서는 학급자치회의 시간에 손들고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친구들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나도 들지 않았다.

질문1 수민이는 학급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질문2 여러분도 수민이처럼 학급 생활을 하며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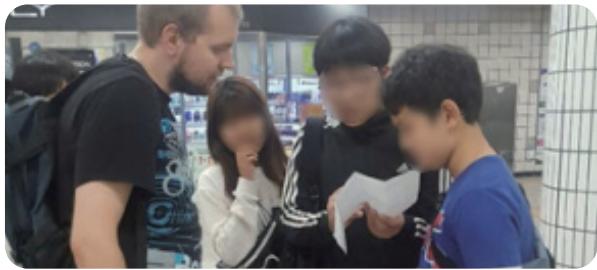
질문3 친구들이 학급회의 시간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료2

우리가 만드는 학급



○○초에서는 학급자치회의를 통해 학급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했습니다. 한 학급은 회의 결과에 따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핼로윈 파티'라는 행사를 계획하였고 호박 바구니를 구입하여 친구들과 서로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급 행사에 모두 참여하고, 진행하면서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에서는 학급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체험 장소와 내용, 교통편, 식사 등을 직접 계획하는 '학교 밖 탐험' 체험학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4-5명이 한 팀이 되고 학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림자 교사가 되어 따라 다닙니다. 그림자 교사는 학생들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감

이해

판단

행동

질문1 선생님이 계획하는 행사나 체험학습과 학생들이 계획하는 행사와 체험학습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질문2 선생님이 계획하는 행사나 체험학습과 학생들이 계획하는 행사와 체험학습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질문3 여러분이 우리 학급에 제안하고 싶은 행사나 체험학습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급자치와 민주시민성



자료1 학급자치의 의미

■ 학급자치란 무엇일까요?

학급자치는 '나와 우리의 일'에 참여하여 서로 상의를 통해 결정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준비와 진행, 마무리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을 학급자치활동이라고 합니다.

학급자치활동은 학급 모두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학급회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며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모든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급자치는 학생자치의 바탕이 됩니다.

■ 학급 자치 활동에 이러한 마음으로 참여해요.

- 모두가 스스로 의견을 말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자율성)
 - 참여하는 동안 되도록 모두를 존중하고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려요. (공공성)
 - 결정한 내용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며 실천해야 해요. (연대성)
- 이러한 마음을 '민주시민성'이라고 합니다.

- 출처 : 학생 시민을 위한 학생자치 안내서, 인천광역시교육청(2021)

질문1 학급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이 어울리는지 연결해보세요.

모두가
스스로 의견을 내고
결정합니다.

모두를 존중하고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행동하여
실천합니다.

• 나온 의견이 누군가에게
가장 불편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 우리 결정이 반영된
학급 규칙을 만듭니다.

• 학급회의에 불편한 점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안건을 제출할 수 있어요.

• 의견이 누군가를 벌주거나
지키기 어려운 건 아닌지 살핍니다.

• 학급자치회의 결정을
함께 실천하고 행동합니다.

• 다른 학급과 학년도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함께 활동합니다.

자료2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시민성

■ 미연이의 고민

어느 날, 학급 회장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안전 걸음 포스터를 만들어 복도에 붙이자고 했어요. 우리들은 더 좋은 생각은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학급 회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다며 포스터를 만들자고 하셨어요. 포스터 만들기는 좋은 일인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직접 결정하지 못해 뭔가 답답했어요.

■ 석률이의 고민

오늘 학급자치 회의 주제는 “급식 먹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었어요. 다수결을 통해 ‘먼저 손 씻고 오는 순서대로 먹자’는 의견이 결정되었어요. 그런데 ‘빨리 먹고 싶어서 손을 대충 씻거나 복도에서 뛰게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했어요.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게 된 윤서가 걱정됐고요.

■ 찬미의 고민

학급자치 회의에서 ‘분리수거 잘하기’가 결정됐어요. 종이 상자를 구해서 보기 좋게 꾸미기를 했어요. 함께 한 일이라 무척 뿌듯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계속 쓰레기를 엉뚱한 곳에 버려요. 처음에는 잔소리도 해봤지만, 지치더라고요. 결국, 분리수거는 흐지부지 돼버려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

이해

판단

행동

질문1 미연이와 석률이, 찬미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미연이의 고민

석률이의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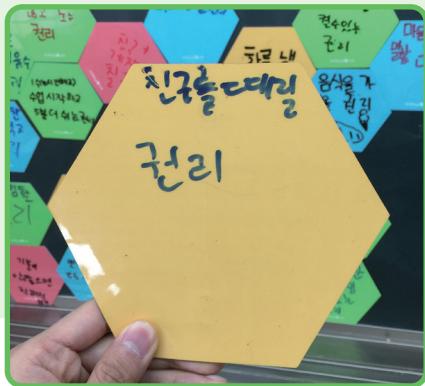
찬미의 고민

질문2 학급자치 과정에서 생긴 미연이와 석률이, 찬미의 고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명의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편지를 써 봅시다.

에게

판단
해요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료1 친구를 때릴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반 규칙 만들기에서 어떤 학생이 '친구를 때릴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건 있을 수 없는 규칙이라고 했으나,

"친구한테 억울하게 피해 보거나 먼저 한 대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누구나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한 대 정도 때릴 수 있다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부 학생들이 그 의견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질문1 '친구를 때릴 권리'를 학급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2 '친구를 때릴 권리'를 학급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견 내용	의견을 내놓는 까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주제로 한 사회 수업을 마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등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기에는 어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함께 결정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안하였습니다.

- 쿠키뉴스(2021.11.26.)



질문1 사회나 어른들이 초등학생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공감

이해

판단

행동

질문2 여러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3 가정과 학급, 마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자료

학급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찾기



만약, 우리 학교 이름에 ‘똥’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여기 대변초등학교가 있어요. 학생 부회장은 이름을 바꾸기 위해
학교 학생들과 함께 마을 주민과 시민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고 졸업한 선배
어르신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해서 무려 3천 건의 서명을
받은 뒤 이 마을의 옛 지명인 ‘용암초등학교’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 SBS 뉴스 PICK(2017.9.8.)

질문1 우리 학급에서 이미 결정된 규칙이나 약속, 생활 모습 중에 불편하거나 바꾸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고 느끼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질문2 여러분이 더 나은 학급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써 봅시다.

더 나은 학급을 위한 나의 의견서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어려워요!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쓴 사람		이 의견을 추천하는 사람	

활동

학급자치에서 학생자치로 나아가기



초등학교에서는 교가의 노랫말이 자극적이고,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교어린이 회의에서 노랫말을 바꾸는 것을 안건으로 결정하고 학급자치 회의를 통해 변경할 노랫말을 공모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충무공 피흘린 앞바다는'은 '충무공 지켜낸 앞바다는'으로, '이 고장 일천건아 배움의 보금자리'는 '이 고장 꿈과 희망 배움의 보금자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 베타뉴스(2022.2.19.)

질문1 평소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바꾸었으면 하는 우리 학교 문제가 있었나요? 있다면 활동 순서에 맞춰 학급자치 회의를 하고 전교학생자치 회의에 안건을 제안해 봅시다.

[활동순서]

- 학급자치회의 시간에 '우리 학교 문제'를 주제로 바꾸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내고 그 중 하나를 골라 봅시다.

- 이 문제를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 종이와 스티커를 준비해 학생들에게 의견을 조사해 봅시다.

- 전교학생자치회에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해 봅시다.



공감

이해

판단

행동

[3-4학년]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 프로젝트

관련 교과	국어, 사회, 도덕, 미술	적용학년	3-4학년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공감할 수 있다.■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학교와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 행동할 수 있다.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		
인천교육 핵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해결 역량, 다양성 존중 역량, 협력 역량		

교육과정 성취기준 맵핑

성취기준

- 【4국01-01】 대화의 즐거움을 알고 대화를 나눈다.
- 【4국01-02】 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 【4국01-03】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 【4국01-05】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 【4국01-06】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 【4국02-04】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한다.
-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 【4사03-06】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 【4사04-06】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문제(편견, 차별 등) 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4도02-04】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경청 도덕적 대화하기 도덕적 민감성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4도03-01】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공익의 중요성을 알고,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기른다.
- 【4도04-01】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4미01-01】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하는 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다.
-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 【4미02-04】 표현 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

위 성취기준은 다음 자료에 적용한 성취기준입니다.

이 외의 다른 성취기준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다양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공감
해요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자료

학교 앞 배수구가 막혀 있어요



담배꽁초 속에 필터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에요. 일반 플라스틱 제품보다 더 빨리 분해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 정수시설로 걸려지지도 않아 결국 먹이사슬을 타고 우리 몸속에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미세 플라스틱은 1인당 연간 약 11,000g이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아주 작은 플라스틱으로 섭취 시 세포를 파괴하거나 다른 물질의 독성을 증폭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물이 바다로 흘러가 10만 마리의 바다거북과 100만 마리의 바다새도 생명을 잃는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출처: 오늘의 행동 사회적 협동조합 내용 재구성

질문1 여러분도 배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질문2 배수구의 담배꽁초들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마을의 배수구 문제를 해결하기

왼쪽의 사진은 배수구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물고기의 가시만 보이게 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배수구에 버리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을 가리켜 ‘넛지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넛지효과를 통해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여 폭우시 배수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 비로 인한 피해를 줄여 줍니다.



- 출처: 대국민 환경분야 넛지 공모전 우수과제(2010)

※넛지(nudge)효과: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공감

이해

판단

행동

질문1 배수구에 위와 같은 그림을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2 내가 물고기 모양을 이용하여 배수구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지 생각해보고 그려봅시다.

그림	설명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요



자료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00초등학교 학생들은 불법주차 된 차들을 이리저리 피해 학교에 갑니다. 차들이 학교 앞 작은 도로를 쟁쟁 달려 위험하지만, 과속 방지 턱은 낮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생님과 함께 우리 마을 안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을 살피면서 위험한 곳을 조사해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안전 지도와 편지를 받아 본 구청장님은 직접 00초등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 출처: 안전 지도로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배성호 글, 이유진 그림, 초록개구리, 2017)

질문1 위 학생들은 마을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꼈나요?

질문2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했나요?

질문3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활동**마을 안전 지도 만들기**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인 지역과 이웃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활동 중 하나로 '마을 안전 지도 만들기'가 있습니다. '마을 안전 지도 만들기'의 주제는 마을 놀이터와 같은 시설의 불편 사항, 개선할 문제 등 마을의 관심사라면 어느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마을 안전 지도 만들기'는 주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지도에 직접 표시하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지도 제작 방법입니다.



(가) 우리 마을의 문제 찾기



(나)현장 조사를 통한 문제 원인 분석하기

**공감****이해****판단****행동**

질문1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2 해당 마을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해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질문2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순서에 따라 '마을 안전 지도 만들기' 만들어 봅시다.

[활동순서]

- 가. 마을 문제에 따라 모둠별을 정합니다.
- 나. 마을 지도를 준비합니다.
(종이 지도, 인터넷 지도, 모바일 앱 등 활용 가능)
- 다. 현장 조사와 검색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도에 표시합니다.
- 라. 모둠에서 만든 지도의 의미를 발표하고
서로 공유합니다.

판단 해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료

뚱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00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돼지(이름은 뚱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돼지를 키우는데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결국 뚱이는 우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뚱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뚱이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과 같은 곳으로 보내자는 의견과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므로 함부로 보내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과연 뚱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1 뚱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질문2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질문3 내가 학생 대표로서 뚱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공동체 회의’에 참석한다면 어떤 의견을 발표할까요?

교사

뚱이는 무리지어 살아야하는 동물이에요. 혼자서는 너무 외롭습니다.
같은 돼지들이 있는 곳에서 더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

학부모

우리 아이가 입학할 때 교장선생님과 뚱이가 교문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좋아했어요.
아침마다 뚱이를 보러 가야한다며 학교가는 길을 즐거워했습니다. 뚱이는 우리 아이들의 친구예요.
친구를 다른 곳을 보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학생대표(나)

사례**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0년 00초등학교의 교훈석은 ‘지금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최고가 될 수 있다.’였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문구 같지만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최고가 아니면 안될까?’, ‘꼭 최고가 되어야만 할까?’라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교훈석 문구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부모가 제안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우리들 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00초등학교 교훈석



현재 00초등학교 교훈석

**공감****이해****판단****행동**

질문1 위 초등학교에서 교훈석 문구를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2 우리 학교의 교훈석 등 상징물을 살펴봅시다. 문제가 있어 바꾼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요?

우리 학교 교훈석(상징물) 문구	
문제 찾기	우리 학교 교훈석 문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원인 분석하기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해결방안 찾기	바꾸고자 하는 교훈석 문구는 무엇인가요?
실천계획 세우고 실행하기	바꾸고자 하는 교훈석 문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3~4학년군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프로젝트

행동 해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사례

우리도 마을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어요

00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우리 마을의 시설물이 어린이에게 안전한지 조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시설물은 깨끗한데, 놀이터처럼 어린이만 이용하는 시설은 지저분하거나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 낙서로 가득 찬 학교 앞 마을 놀이터



(B) 안전신문고 신고 후 깨끗해진 놀이터

학급 학생들은 낙서가 되어 있거나 위험한 놀이터를 모두 조사한 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해당 기관에서 깨끗하게 수리하고 페인트칠을 칠했습니다.

* 안전신문고: 도로나 시설물의 고장, 불법주차나 교통위반, 쓰레기 방치, 환경오염 사례들을 문제 해결을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1 위 초등학교 학생들이 놀이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나요?

질문2 우리 학교 주변과 마을에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시설이나 환경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지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 이름	학교 주변과 마을의 안전 문제

활동

안전신문고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요

(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 받습니다.

(나) 앱을 실행시키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발생지역, 내용, 휴대전화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질문1 우리 학교 주변과 마을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우리 마을 안전 신고서’로 작성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결해 봅시다.

우리 마을 안전 신고서	
발생한 곳	- 어떤 점이 안전하지 않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했나요?
신고 내용	-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질문2 안전신문고 이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참여
프로젝트
수업하기

5-6학년군



[5-6학년]

모두를 위한 「인권」 프로젝트

관련 교과	국어, 사회, 도덕, 미술	적용학년	5-6학년
학습목표	■ 인권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 동아시아의 시민으로 평화와 공존을 위해 연대하여 행동할 수 있다.		
시민성	■ 자율성 ■ 공공성 ■ 연대성		
인천교육 핵심역량	■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해결 역량, 다양성 존중 역량, 협력 역량		

교육과정 성취기준 맵핑

성취기준

- 【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 【6국01-03】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 【6국01-06】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 【6사05-03】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민주주의 실천 사례를 탐구하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 【6사02-02】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구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 【6도02-02】 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른다.
- 【6도03-01】 인권의 의미와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권 존중의 방법을 익힌다.
- 【6미02-02】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 【6미02-02】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위 성취기준은 다음 자료에 적용한 성취기준입니다.

이 외의 다른 성취기준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다양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5~6학년군

모두를 위한
「인권」프로젝트

공감
해요

사진과 그림으로 만나는 인권



자료1 사진으로 읽는 세계 시민들의 비극



출처: 뉴스1(2022.2.24.)

질문1 축구선수들은 왜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었을까요?

질문2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3 평화는 인권과 관계가 있을까요?

자료2

우리가 알았던 혹은 몰랐던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가) 우리가 몰랐던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출처: EBS 지식채널e



(나) 우리가 알았던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 출처: 핑크퐁 유튜브 채널



공감

이해

판단

행동

질문1 (가)에서 소녀의 모습을 관찰하여 특징을 찾아봅시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백린: 성냥을 만드는데 중요한 물질로 성냥공장에서 오래 일하면 아래턱 부근에서 고약한 냄새와 함께 고름이 나오면서 뼈 조직을 썩게 하는 물질

질문2 (나)에서 성냥팔이 소녀가 죽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3 내가 성냥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약속



자료1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약속

01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위생적인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
-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권리
- 휴식을 누릴 권리 등

02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부모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전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02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법이에요.
*협약: 협상을 통한 약속이나 계약

그래서 11월 20일이
'세계 어린이의 날'이군요!

03 발달권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놀 권리 등

04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 평화로운 집회를 할 권리
- 종교에 대한 신념을 표현할 권리 등

04



질문1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읽어 봅시다.(P.60 아동을 위한 우리의 약속 참조)

질문2 아동 4대 권리 중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조항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권

이유

질문3 다음은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입니다. 아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봅시다.

[보기] 차별, 이익, 존중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 되는 원칙, 네 가지

모든 아동은 성별, 종교,
가정 환경 등 어떠한 이유로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은 생명, 생존,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의견은
()받아야 합니다

- 참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https://www.unicef.or.kr>)

자료2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간의 약속

이데일리

IT·과학 모바일 방송통신 IT·인터넷 게임 과학일반

제20대 대통령 선거

키오스크에 방역패스까지...갈곳 잃은 노인·장애인 '디지털 포용' 시급

[코로나가 안겨준 숙제 '양극화']
심화하는 디지털 소외
고령층 디지털 수준 일반인의 66%
복합한 UI, 교육부족... 활용도 미흡
키오스크 음성서비스 등 장애인 고려도 부족
'디지털 포용법', 더 미루지 말아야

등록 2022-01-03 오전 5:02:29
수정 2022-01-03 오전 9:03:01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P.62 대한민국헌법 참조)

질문1 키오스크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어떤 경우였나요?

질문2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질문3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감

이해

판단

행동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료1

급식 숟가락·젓가락에도 인권 문제가 있을까요?



- 출처: 오마이뉴스(2019.8.1.)

학교 급식 시간에 초등학생이 어른들과 같은 숟가락·젓가락 제공하는 것은 학생의 인해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제공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의 소개된 기본원칙 중 하나.

학교 급식에서 어른과 같은 숟가락 젓가락 제공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제공 반대

- ① 급식은 교육으로 학생들도 어른용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법을 배워야 합니다.
- ②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크기를 구별하여 세척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제공 찬성

- ① 어린이와 어른은 신체적 차이가 있어 다른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공해야 합니다.
- ②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 분리 수거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질문1 위 사안은 인권과 관련이 있을까요?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정리하고, 모둠별로 토론해 봅시다.

자료2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라고 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차별, 편견과 같은 태도를 담은 표현을

□□□□이라고 합니다.

*혐오 표현은 말과 글 뿐만 아니라 행동, 복장, 상징물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감

이해

판단

행동

질문1 위 글에서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혐오 표현

표현에 담긴 의미

혐오 표현인 이유

질문2 생활 속에서 혐오 표현을 쉽게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3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요? 인권 침해일까요?

표현의 자유

인권 침해

타당한 근거를 생각해 봅시다.

타당한 근거를 생각해 봅시다.

근거를 뒷받침하는 제도나 자료를 찾아봅시다.

근거를 뒷받침하는 제도나 자료를 찾아봅시다.

*표현의 자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 등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로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이 있음(헌법2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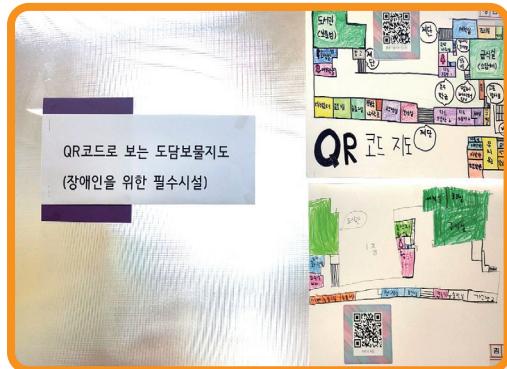
활동 해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활동1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것들



**“우리 학교 화장실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 표시가 없다는 걸 그전엔 전혀 몰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모두가 행복한 인권 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내 장애인 시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곳곳을 다니면서 어떤 장애인 시설이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살펴본 뒤 QR코드를 활용한 장애인 시설 지도인 ‘보물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서 학생자치회에 전달했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학생자치회는 교장 선생님과 협의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파손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가겠다는 약속했습니다.

질문1 인권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2 학교의 모든 사람이 행복한 인권 공동체 프로젝트를 위한 방법을 [만다라트]를 활용하여 계획해 봅시다.

	모두가 행복한 인권 공동체 프로젝트	

(예시) 인권 배지 만들어 알리기

활동2**수요집회에 나선 초등학생들, "일본은 사죄하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역사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결을 위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첫 수요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일본군 '위안부'의 부당함과 일본 정부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요집회 정식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로,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입니다.

- 출처: 오마이뉴스(2021.11.15.)


공감
이해
판단
행동

질문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참여활동 4단계에 맞춰 행동해 봅시다.

문제 상황 찾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왜 생겼나요? 누가 피해를 보았을까요?

원인 분석하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결 방안 찾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천 계획 세우고 실행하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을 실천해 봅시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방문하기
womenandwarmuseum.net

수요집회 참가 피켓 만들기

이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5-6학년]

평화와 공존의 「생태」 프로젝트

관련 교과	국어, 사회, 도덕, 미술, 실과	적용학년	5-6학년
학습목표	■ 동아시아의 시민으로 평화와 공존을 위해 연대하여 행동할 수 있다.		
시민성	■ 자율성 ■ 공공성 ■ 연대성		
인천교육 핵심역량	■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해결 역량, 다양성 존중 역량, 협력 역량		

교육과정 성취기준 맵핑

성취기준

- 【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 【6국01-03】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 【6국01-06】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 【6사05-03】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민주주의 실천 사례를 탐구하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 【6도02-02】 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른다.
- 【6미02-02】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 【6미02-02】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 【6실05-08】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 【6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위 성취기준은 다음 자료에 적용한 성취기준입니다.

이 외의 다른 성취기준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다양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지구의 위기



자료1

기후 변화로 사라지는 지구



출처: KBS뉴스(2021.11.11.)

질문1 투발루 외무장관이 물속에서 연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2 투발루 국민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3 내가 만일 투발루에 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자료2

지구에 찾아온 엔드게임



1부 엔드게임 1.5°C



출처: KBS 다큐인사이트(2021.9.3)



공감

이해

판단

행동

질문1 두 그림에서 말하고 싶은 지구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2 제목「엔드게임, 1.5°C」는 무슨 뜻일까요?

질문3 세계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구 환경을 위해 알아야 할 것



자료1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2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강화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보장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13 기후변화와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전	15 육상생태계 보전	16 평화·정의·포용	17 지구촌 협력 강화	

-출처: 지속가능발전 포럼

질문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질문2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왜 필요할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3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료2**지구환경을 위해 맞잡은 손**

○○초등학교 학생자치회는 학교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재활용 배출 상태를 점검하고 실태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짐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 동참했고, 선생님들도 종이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A 청소년들의 관심과 실천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B

C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세계의 관심과 실천 D

지구
환경

2018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기후 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 48차 총회에서 ‘지구 온난화 1.5°C 특별보고서’가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C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

이해

판단

행동

질문1 다음 글을 빙간에 들어갈 자료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질문2 기후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3 지구환경을 위해 A청소년, B기업, C정부, D세계가 함께 연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단
해요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료1 채식, 나를 위한 권리일까? 모두를 위한 의무일까?



질문1 육류 소비는 지구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2 「채식 급식」에 각각의 입장에 타당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학교 채식 급식 의무 실시 필요

타당한 근거를 생각해 봅시다.

학교 채식 급식 선택권 존중

타당한 근거를 생각해 봅시다.

근거를 뒷받침하는 제도나 자료를 찾아봅시다.

근거를 뒷받침하는 제도나 자료를 찾아봅시다.

질문3 나는 「채식 급식」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자료2**기후 위기는 인권의 문제일까요?**

청소년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 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어른들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심각하게 해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출처: 한겨레신문(2020.3.14.)

**공감****이해****판단****행동****질문1**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에 나선 까닭은 무엇인가요?

*헌법소원: 기본권(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질문2 청소년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동의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질문3** 기후 위기는 인권의 문제 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활동 해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활동1 스쿨 챌린지 1.5°C

기후행동 1.5°C 스쿨 챌린지 홍보 영상



- 환경부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 www.c-action.kr

Google Play



▲ 기후행동 1.5°C 앱 설치하기

App Store



- 출처: 기후행동 1.5°C

질문 2주 동안 집이나 학교에서 기후행동 챌린지를 실천하고, 실천한 내용을 우리 학급 SNS에 공유해 봅시다.

■기후행동 챌린지 예시 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이면지 쓰기, 양치컵 쓰기, 채식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하기, 플로깅(줍깅), 에어컨 대신 선풍기 부채 사용하기,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쓰레기 배출없는 하루 살기, (물)티슈 대신 행주 또는 손수건 쓰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1회용 포장용기 대신 다회용기 사용하기, 짧은 거리 걷거나 자전거 타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15일차

■소감 나누기

활동2 학생이 제안하는 기후정책



그린피스는 ‘내가 그린 Green 편지’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며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마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정책: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 규칙, 사회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

질문1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2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3 우리 지역의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기후정책을 제안해 봅시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님들, 예거!

을 무너라 면 어떤 사건이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대처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처하는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 이것이 경쟁 경제에서의 경쟁을 더 이상은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대처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경쟁 경제에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나 대기업이나 정부나 다른 국가와 같은 대처하는 대상은 물론 아니라 개인이나 노동자나 소비자나 투자자나 경쟁업체나 협력업체나 대처하는 대상은 물론이고 개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동반자나 같은 대처하는 대상이다. 이런 경쟁 경제에서 대처하는 대상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쟁 경제에서 대처하는 대상은 전 세계인이다. 이런 대처하는 대상은 전 세계인이다. 그래서 대처하는 대상은 전 세계인이다. 그래서 대처하는 대상은 전 세계인이다.

대한민국 초등학생 오예린 드림



공감

018

파다

행동

학생 사회참여활동

부 록



유엔아동권리협약

- 출처: 유니세프

 1 아동의 정의	 2 차별하지 않기	 3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4 일상에서 누리는 권리	 5 가족의 역할	 6 생존과 발달	 7 이름과 국적
 8 신분 보호	 9 가족은 늘 함께	 10 다른 나라에 사는 부모님 만나기	 11 납치로부터 보호	 12 아동의 의견 존중	 13 표현의 자유	 14 생각과 종교의 자유
 15 모임 만들고 참여하기	 16 사생활 보호	 17 정보 접근하기	 18 부모의 책임	 19 폭력으로부터 보호	 20 가족이 없는 아동	 21 입양 아동
 22 난민 아동	 23 장애인 아동	 24 영양과 건강, 환경	 25 시설 아동 실태 조사	 26 사회 경제적 지원	 27 음식, 옷, 안전한 집	 28 교육
 29 교육의 목적	 30 소수 문화, 언어와 종교	 31 여가, 놀이, 문화, 예술	 32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33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	 34 성 착취로부터 보호	 35 인신매매와 유괴 예방
 36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37 구금된 아동 보호	 38 전쟁 상황에서 아동 보호	 39 회복과 사회복귀	 40 법을 어긴 아동	 41 아동을 위한 최선의 법	 42 아동권리 알리기
 43-54 협약의 이행	<h1>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h1> <p>유엔아동권리협약</p>					

아동을 위한 우리의 약속(유엔아동권리협약)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1조>아동의 범위

18세가 안 된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힌 권리 가지고 있습니다.

<2조>차별 안하기

우리는 절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3조>아동을 제일 먼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 등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4조>정부의 할 일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5조>부모의 책임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를 보호하는 다른 어른들은 우리를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6조>생존과 발달

우리는 태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7조>이름과 국적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조>신분 되찾기

우리가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9조>부모와의 이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엄마와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10조>가족과의 재결합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부는 우리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이나 출국을 쉽게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11조>내 나라에서 살기

우리를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정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12조>의견 존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3조>표현의 자유

우리는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14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15조>모임의 자유

우리는 모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16조>사생활 보호

우리는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등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17조>유익한 정보 얻기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해로운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18조>부모의 책임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를 잘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19조>폭력과 학대

우리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조>가족 없는 어린이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름지 않아서 부모와 헤어져 사는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1조>입양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때, 우리의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우리와 관련된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2조>난민어린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가족과 헤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족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23조>장애아 보호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24조>영양과 보건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5조>시설아동 실태 조사

우리를 잘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를 특정한 시설에서 키우도록 한 경우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26조>사회보장제도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27조>적절한 생활수준

우리는 제대로 먹고 입고 교육받을 수 있는 생활수준에서 자라야 합니다.

<28조>교육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9조>교육의 목적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고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30조>소수민족 어린이

소수민족인 우리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31조>여가와 놀이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32조>어린이 노동

우리는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33조>해로운 약물

우리는 마약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34조>성 착취

우리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과 관련된 활동에 우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5조>인신매매와 유괴

정부는 우리가 유괴를 당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6조>모든 착취로부터의 보호

정부는 우리를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우리의 복지를 해치는 어른들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37조>어린이 범죄자 보호

우리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릴 수 없으며 우리는 고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른 범죄자와 함께 지내게 해서도 안 됩니다.

<38조>전쟁 속의 어린이

우리는 전쟁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39조>몸과 마음의 회복

우리가 학대 받거나 버려지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전쟁 중에 고통 받은 경우 정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40조>공정한 재판과 대우

범죄혐의를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며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례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된다.
-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권)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짓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권)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재판권)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권)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는 현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와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법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50조**
 -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종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3조**
 -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불이고, 재적의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54조**
 -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제55조**
 -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제60조**
 -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종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제61조**
 -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62조**
 -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63조**
 -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64조**
 -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제65조**
 -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수·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장 법원

-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掌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집필

인천도림초등학교 교사 호명성
인천경원초등학교 교사 이동철
인천당산초등학교 교사 김연민
인천도담초등학교 교사 하혜란
인천명현초등학교 교사 황진호
인천부내초등학교 교사 정영은

검토

인천만수초등학교 파견교사 백신종
인천광역시교육청 파견교사 김요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권보호관 유경환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김용진

표지 및 삽화

인천문학초등학교 교사 이정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 연구사 박상영

발행일

2022.3.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